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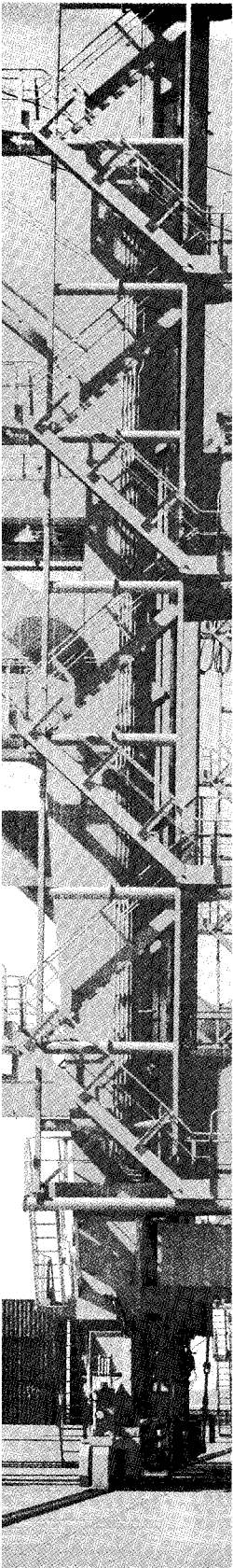
- 법 률 : 제2009-840호
- 예고기간 : 2009. 9. 17 ~ 10. 7
- 담당부처 :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리모델링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사무에 대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용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과 유사하게 조정하며, 주택거래 신고인이 자료제출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내역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화 하고, 주택관리사는 실무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응시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문제 및 법률 소급적용 문제 해소를 위해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부처소관 권한중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통보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 4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나. 리모델링 추진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명료화하고, 시공자 선정도 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게 하도록 개선
- 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주택관련 경력을 갖추었거나 향후 동일 경력을 갖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부여토록 함이 현실여건에 부합 하나, 현행 규정상 주택관리 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련 경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민원제기 등이 많아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
- 라. 주택거래 신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제출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자료 등을 제출할 때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신고내역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할 서류를 구체화
- 마. 주택성능등급표시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 결정토록 함.
- 바.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기준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처분기준과 달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정
- 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과 「주택법」간 하자보수기간의 상충문제 및 소급적용 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택법 부칙을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전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 법 령 : 제2009-215호
- 입법예고 : 2009. 9. 15~10. 5
- 담당부처 :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54)
-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

◎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목적의 재정리

- (1) 2008년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통합하기로 함
- (2) 이에 따라 법 목적에 「기능대학법」의 핵심적인 법 목적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포함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 (1) 현행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에 대한 지원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시책(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참여 촉진,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반구축,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다. 사업주단체 등의 책무 신설

- (1)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 (2)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단체 등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 지도록 산업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

- (1) 현행 규정에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기

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음

-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함

마.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지원 신설

- (1) 그간은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식 운영으로 인해 훈련 수요자인 산업계의 참여가 미흡하여 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시행하는 사업(산업부문별 직업훈련 수요조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격기준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바. 고용보험법과의 중복 해소

- (1) 현행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고용보험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변경·추가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2) 이 법은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의 대강만 정하고, 지원대상·요건·수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중복 규정의 문제를 해소함

사.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운영 규정 정비

-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적합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참여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아.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위탁계약의 해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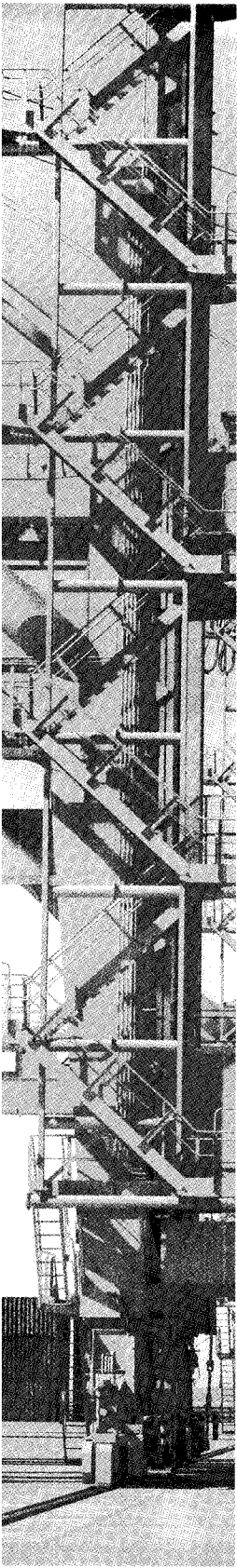
- (1) 현행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정부위탁훈련의 위탁해지 규정이 인정·위탁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유사한 제재규정이 조항마다 반복되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 이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위탁계약의 해지와 섞여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통합하여 정비함

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

-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직업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 외에는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 이에 따라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훈련시장에서 불필요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훈련성과(취업률 등)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차.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 (1)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에 따라 현행 「기능대학법」의 주요 규정을 개정안에 포섭하여 신설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9-119호
- 예고기간 : 2009. 9. 21~10.12
- 담당부처 : 소방제도과(02-2100-5334)
-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주요내용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물을 사용하는 소화시설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며, 축사 및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및 면제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마련함

- 1) 현행 법령상 소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규정이 없음
- 2) 내진설계 대상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범위 조정,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함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2차시험 면제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이 없음
- 2) 실무와 밀접한 법령을 시험과목으로 추가하며, 2차시험 모두 면제 사유자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다수인 완강기를 소방용기계·기구로 함

- 1) 다수인 피난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음
- 2) 다수인 완강기를 새로운 소방용기계·기구로 정함

라. 고시원 규모에 따라 용도를 분류함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 8. 5)에 따라 용도가 분류됨
- 2)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함

마. 옥외소화전설비 면제대상을 마련함

- 1)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때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9-157호
- 예고기간 : 2009. 10. 6~26
- 담당부처 : 민간투자정책과(02-2150-7411)
- 전문참고 : 기획재정부(www.mosf.go.kr)

◎ 개정이유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자전거 도로를 민간투자대상인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립시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되, 운영중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등록후 6개월 경과시 순자산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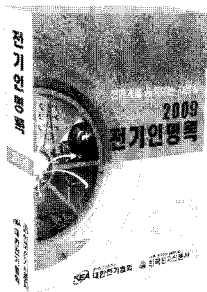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설립시 최소자본금 수준 인하

- (1) 설립시 최소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
- (2)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순자산액은 50억원 이상을 유지

문의 _ 대한전기협회 홍보실 02-3393-7693~4

전력·에너지업계의 인명사전 「2009 전기인명록」 발간 안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기에너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야별 인명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2009 전기인명록을 발간, 8월 25일부터 시중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지와 본문 레이아웃 등 편집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2009 전기인명록은 전기계 주요 기관 및 관련기업의 현독성을 바탕으로 자료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규 격 : 4×6배판, 776면
- 정 가 : 30,000원
- 대한전기협회를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electricity.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009-842호
- 예고기간 : 2009. 9. 21~28
- 담당부처 :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상한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주차장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을 원룸형은 50제곱미터로, 기숙사형은 3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함(시행령 제3조제1항)
- 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용시설(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도록 함(규정 제2조제3호)
- 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120제곱미터 당 1대) 및 기숙사형 주택(130제곱미터 당 1대)의 주차기준을 추가 완화함(규정 제27조제6항)
- 라.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한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함(규칙 제6조의2제2항 신설)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01

- 주택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감리원배치신고전 또는 배치신고 후 모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부실벌점을 받지 않게 되는지
- 아니면 감리배치신고 후에는 지정권자가 아닌 발주자의 승인만 받아도 부실벌점을 받지 않게 되는지

- PQ고시 제13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로 i)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전에는 미리 시·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하며, ii)감리원 배치현황신고 후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배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의 승인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PQ고시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번호 2.12(발주자 승인)와 2.15(시·도지사 승인)의 해당 주요부실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17)

02

- 감리용역계약시 관급·사급자재를 제외한 경우, 계약내역에 없는 자재검수를 발주자가 구두지시 거부할 수 있는지
- 감리계약시 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와 자재비를 제외하고 계약한 경우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 계약관련서류와 설계도서가 다를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공사비는 총 예정금액 중 지급(관급)자재와 지입(사급)자재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재의 검토·확인 등을 감리원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감리용역 계약시 자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자의 자재검수 구두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계약서류와 설계도서가 다를 때의 우선순위는 이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질의 2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18)

03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9호(2007. 12. 3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관련입니다.
- 발주처 공고내용에 "항만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독, 공사감리 수행실적은 100% 인정, 그 외 전력 시설 물의 감독, 공사감리수행실적은 60%만 인정한다" 고 되어 있을 때,
-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에서 재직하며 감독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아래와 같이 전력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에 기재 되어 있을 시 경력 및 실적 평가에 60%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PQ고시 부표 2-1제1호(참여감리원의 평가) 라목에서 참여분야 직무실적의 평가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서 별도제시)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수행실적으로 평가하고,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PQ고시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수행한 감독실적의 인정여부는 입찰공고 내용 및 당해 용역의 특성을 참고하여 해당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23)

04

당사에서 수행한 아래 감리용역중 "154kv 지중선로 4.1km 산설(○○변전소에서 ○○주식회사까지)부분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4항 "배전선로"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용역명 : ○○주식회사 154kva 배전선로 및 변전소 증설공사 감리용역
2. 용역의 개요 :
 - 수전설비 : 220,000kW/154,000v
 - 길 이 : 4km
 - 기타개요 : 154kV 수전설비 140MVA 증설(기설 80MVA)
154kV 지중선로 4.1km 산설(○○변전소에서 ○○주식회사까지)
3. 발주자 : ○○주식회사(민간기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변전소"라 함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 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 그 밖의 전기설비의 총합체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변전소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를 송전선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개요 등으로 볼 때, 5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이므로 송전선로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22)

생활속 법령상식

제1심 승소후 채무자와 분할상환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판결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글 _ 박종복 변호사

Q 본인은 “갑”에게 미수금채권 6,000만원이 있어서 미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제1심 판결후 “갑”이 본인을 찾아 와서 앞으로 매달 500만원씩 1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겠으니 승낙하여 달라고 요청해 왔다. 본인이 분할상환 요청을 승낙하면 판결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A “갑”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위 판결은 확정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갑”의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갑”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제1심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귀하는 가집행에 기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만약 귀하가 “갑”의 분할상환 요청을 받아들여 매달 500만원씩 1년 동안 변제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 한 위 판결의 효력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므로, 귀하는 언제든지 위 판결문에 기초하여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귀하가 “갑”의 제안을 받아들여 분할상환을 승인하여 줄 경우, 그 사이에 “갑”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할 수도 있고, 제3의 채권자가 나타나 “갑”의 재산에 압류를 하여 올 수도 있으므로, 그 유예기간은 가급적 단기로 하여야 할 것이고 부득이 장기간 유예하여 줄 경우에는 채무변제를 담보할 담보권(근저당권설정 등)을 제공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